2 0 2 2 회 계 연 도 서 울 특 별 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4 202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5. 3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3. 6. 1.

4.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 27.)

- 승인

## Ⅱ.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 1.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O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3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4억 7천 2백만원 대비 11억 6천만원이 감소함
- O 수입은 총 158억 2천 7백만원으로,
  - 이자수입 9천 9백만원,
  - 공제료수입 68억 2백만원,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수입 1억 9천 1백만원,
  - 소방사업 수익금 1억 6천만원,
  - 학교폭력피해자 구상금 1억 3백만원,
  - 예치금회수 84억 7천 2백만원임
- O 지출은 총 158억 2천 7백만원으로,
  - 공제사업비 68억 9천 1백만원,
  - 예방사업비 2억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천 7백만원,
  -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8천 4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 2천 3백만원,
  -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 73억 1천 2백만원임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 1. 제안경위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년 5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3억 1,100만원 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84억 7,100만원) 보다 △13.7%, △11억 6,0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1〉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7      | 금               | 큠 | 전년도말<br>조 성 액<br>(A) | 당 해<br>계<br>(B=C-D) | 연 도 증<br>조성액<br>( C ) | 감 액<br>사용액<br>( D ) | 당해연도<br>말 조성액<br>(E=A+B) |
|--------|-----------------|---|----------------------|---------------------|-----------------------|---------------------|--------------------------|
| 학교안전공제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   | 8,471                | △1,160              | 7,355                 | 8,515               | 7,311                    |

### 3. 기금 결산 관련 검토

### (1) 기금 조성 총괄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학교안 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73억 1,100만원으로 '21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84억 7,100만원) 보다 △13.7%, △11억 6.000만원 감소된 것으로 제출됨
  - '22회계연도의 경우, '22년 5월, 전면 정상등교가 실시됨에 따라 직전 2개 년도보다 등교일수가 증가하여 학교안전사고도 증가함으로써 공제급여 지출 액도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표 3-2〉회계연도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조성현황 (2022~2020)

(단위:백만원)

| 회 계<br>연 도 | 전년도말<br>조 성 액<br>(A) | 당 해<br>계<br>(B=C-D) | 연 도 증<br>조 성 액<br>(C) | 감 액<br>사 용 액<br>(D) | 당 해 연 도 말<br>조 성 액<br>(E = A + B) |
|------------|----------------------|---------------------|-----------------------|---------------------|-----------------------------------|
| 2022       | 8,471                | △1,160              | 7,355                 | 8,515               | 7,311                             |
| 2021       | 8,062                | 409                 | 7,070                 | 6,661               | 8,471                             |
| 2020       | 7,019                | 1,043               | 7,264                 | 6,221               | 8,062                             |

### (2) 기금 결산서 작성 관련

- □ 서울시교육청은 '22회계연도에 6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제출된 '22회계 연도 기금 결산서에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한 결산서는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하였음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 다른 기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와는 별 도의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나.

- 교육부의 법령해석사례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 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고, 관련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바,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기금운용관은 기 금결산기준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 고. 기금총괄관리관은 각종 기금을 총괄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결산은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부의「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또한 모든 기금에 대하여 기금결산 총괄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더욱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2년도 예산안 심의시 개별 기금운영부서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개별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어 기금총괄부서가 기금 총액을 총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 우리 위원회의 개선 건의가 교육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 용계획 수립기준」에 반영되어,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하여 단일 의안으로 제출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은 단일 의 안으로 제출한 바,
  - 이미 교육부가 지난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기금결산 총괄 현황"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또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기금결산중 ①기금개요, ②기금결산 총괄 현황, ③기금수입 결산 현황, ④기금지출 결산 현황, ⑤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에서 특정 기금(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만 제외한 상태에서 제출한 것은 교육부의「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위반한 사례로「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3)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검토

#### ①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은 156억 6,2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158억 2,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1억 6,500만원이 초과수납 된 것으로 제출됨

〈표 3-3〉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위 · 백만원) |
|--------|-------------------|--------|--------|---------|-------|---------|--------|----------|
|        |                   |        | 용 계    | 획       | 전 년 도 |         | 수 납 액  | 증 감 액    |
| 구      | 분                 | 당 초    | 수 정    | 증감액     | 이 월 액 | 현 액     |        |          |
|        |                   | (A)    | (B)    | (C=B-A) | (D)   | (E=B+D) | (F)    | (F-E)    |
| 계      |                   | 14,862 | 15,662 | 800     | _     | 15,662  | 15,827 | 165      |
| 전      | 입 금               | -      | -      | -       | -     | -       | -      | _        |
| 예      | 치금회수              | 7,671  | 8,471  | 800     | -     | 8,471   | 8,471  | -        |
| 이      | 자 수 입             | 23     | 23     |         | -     | 23      | 99     | 76       |
|        | 소 계               | 7,166  | 7,166  |         | -     | 7,166   | 7,255  | 89       |
|        | 공제료수입             | 6,859  | 6,859  |         | -     | 6,859   | 6,801  | △58      |
| 기<br>타 | 소 방 수 익           | 160    | 160    |         | _     | 160     | 160    | -        |
| 수입     | 학 교 폭 력<br>구상금회수  | 94     | 94     |         | -     | 94      | 102    | 8        |
|        | 교 육 활 동<br>참여자공제료 | 31     | 31     |         | -     | 31      | 191    | 160      |
|        | 법 인 세<br>환 급 금    | 20     | 20     |         | -     | 20      | _      | △20      |

- **예치금회수**는 당초 76억 7,1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8억원 증가한 84억 7,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한 바,
  -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직전회계연도 가결산에 근거한 결산상 잉여금을 (76억 7,100만원) 수입계획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 당초 계획보다 8억원 증가된 84억 7,1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당초 2,3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7,600만원 증가한 9,900만원이 실수납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직전회계연도 수익률을 근거하여 수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이자 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3-4〉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이자수입 현황 (2022~2020)

(단위 : 백만원)

| 회계<br>연도 |              | 예금                              |              | 정기(<br>(저축보학 | 예금<br>험 포함)   | 기타예금      |               |  |
|----------|--------------|---------------------------------|--------------|--------------|---------------|-----------|---------------|--|
|          | 일평균<br>잔액(가) | 총예금이자 <sup>주1)</sup><br>(나=A+B) | 수익률<br>(나/가) | 일평균<br>잔액    | 정기예금<br>이자(A) | 일평균<br>잔액 | 기타예금<br>이자(B) |  |
| 2022     | 6,335        | 90                              | 1.4          | 4,353        | 65            | 1,982     | 25            |  |
| 2022     |              | (100.0)                         |              |              | (72.0)        |           | (28.0)        |  |
| 2021     | 8,179        | 49                              | 0.6          | 6,775        | 20            | 1,404     | 28            |  |
| 2021     |              | (100.0)                         |              |              | (41.3)        |           | (58.7)        |  |
|          | 9,300        | 187                             | 2.0          | 7,290        | 160           | 2,010     | 26            |  |
| 2020     |              | (100.0)                         |              |              | (85.7)        |           | (14.3)        |  |

- ※ 주1) 기금운용명세서 이자수입 중 국세환급금 및 구상금 이자수입 제외 주2) 구성비( )는 전체 예금이자중 예금종류별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수입중 공제료 수입은 동 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수입계획액(68억 5,900만원) 보다 △5,800만원 감소된 68억 1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제출된 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 제회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금액 산정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22년도 공제료 단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표 3-5〉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학생1인당 공제료)

(단위 : 원)

| 회 계 연 도 | 유       | 초       | 중       | 고        | 평 균     |  |
|---------|---------|---------|---------|----------|---------|--|
| 2022    | 2,940   | 4,510   | 9,550   | 12,700   | 7,425   |  |
| 2022    | (2,800) | (4,300) | (9,110) | (12,100) | (7,078) |  |
| 2021    | 2,530   | 4,400   | 9,350   | 11,550   | 6,958   |  |
| 2021    | (2,300) | (4,000) | (8,500) | (10,500) | (6,325) |  |
| 2020    | 2,530   | 4,400   | 9,350   | 11,550   | 6,958   |  |
| 2020    | (2,300) | (4,000) | (8,500) | (10,500) | (6,325) |  |

※ 주1) ( )은 교육부고시 기준 공제료

- 공제가입 결산인원(895,077명)이 계획인원(906,551명) 보다 △11,474명
이 감소되어 공제료수입 결산액(68억 100만원)이 수입계획(68억 5,900만원) 보다 △5,8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6〉 공제료수입 계획 대비 결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2 0 2 2 7 | 계 획 ( A ) | 2 0 2 2 3 | 결 산 ( B )       | 증 감 (   | B - A ) |
|-----------|-----------|-----------|-----------------|---------|---------|
| 가입인원수     | 공제료수입     | 가입인원수     | 가. 공 제 료<br>수 입 | 가입인원수   | 공제료수입   |
| 906,551   | 6,859     | 895,077   | 6,801           | △11,474 | △58     |

○ 그 외 기타수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의한 소방안전점검대행사업 수익금(1억 6,000만원)과 학교폭력 구상금 회수 (1억 200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1억 9,100만원)로서 당초 수입계획액(3억 600만원) 보다 1억 4,700만원 증가한 4억 5,4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② 지출 결산

-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의 '22회계연도 지출액은 158억 2,700만원 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156억 6,200만원) 보다 1억 6,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된 바,
- 학교안전망구축은 당초 지출계획현액(75억 9,800만원) 보다 △3억 500만원 감소된 72억 9,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예방사업비(1억 7,800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6,500만원), 소송업무(3,000만원) 등의 항목에서 지출계획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공제급여(사고보상비)는 직전회계연도(49억 8,200만원) 대비 16억 1,600만원 (32.4%) 증가한 65억 9,800만원이 지출된 바,
  - '22년 5월, 전면 정상등교로 인하여 '21년도 대비 등교일수가 늘어나 학교안전사고 건수 또한 증가하여 공제급여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 공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                  | 2 0 2  | 2 ( A ) | 2 0 2 | 2 0 2 1 ( B ) 증 감 |       |       |
|----------------------|--------|---------|-------|-------------------|-------|-------|
| 구 분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합 계                  | 13,106 | 6,598   | 7,071 | 4,982             | 6,035 | 1,616 |
| 요 양 급 여              | 13,065 | 4,484   | 7,046 | 2,578             | 6,019 | 1,906 |
| 장 해 급 여              | 39     | 2,034   | 25    | 2,403             | 14    | △369  |
| 유 족 급 여              | _      | -       | -     | -                 | -     | -     |
| 기 타 <sup>주 1 )</sup> | 2      | 80      | -     | -                 | 2     | 80    |

※ 주1) 위로금, 보전비용 등

 ○ 공제사업 지출계획액(69억 4,300만원)은 제출된 기금결산 보고서의 사업 내역별 지출계획액 합계(69억 6,800만원)와 상이한 바(△2.500만원).

- 공제사업중 '손해방지 및 긴급조치 비용지원' 사업내역의 지출계획액이 당초 2,500만원에서 0원으로 수정되었으나, 제출된 결산서에는 수정 지출계획액에 당초금액(2,500만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례는 기금운용부서의 단순 오기일 수 있으나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심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건 작성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수정 필요 사항

〈결산서 p.8〉

(단위: 백만원)

(단위:백만원)

| - | 과 목<br>(세부/사업내역/목) |          | 지 출 7<br>당 초 | 예 획 액<br>수 정 | 전 년 도<br>이 월 액 | 지 출<br>계 획<br>현 액 | 지 출 액 | 다 <del>음</del> 연도<br>이 월 액 |       |   |
|---|--------------------|----------|--------------|--------------|----------------|-------------------|-------|----------------------------|-------|---|
| ŀ | 공                  | 제        | 사            | 업            | 6,906          | 6,943             | 0     | 6,943                      | 6,890 | 0 |
|   | 손<br>긴 i           | 해<br>급 조 | 방 지<br>치 비 용 | 및<br>지 원     | 25             | 25                | 0     | 0                          | 0     | 0 |
|   | 보                  | -        | 전            | 급            | 9              | 0                 | 0     | 0                          | 0     | 0 |
|   | <u> </u>           | -        | 영            | 비            | 16             | 0                 | 0     | 0                          | 0     | 0 |



#### 〈수정필요〉

| 고 | 과 목<br>(세부/사업내역/목) |                     | 지 출         | 7:   | ᅨ 획 액 |       | 전년도 | 지<br>계 | 출<br>획                                 | 지 출 액 | 다음연도  |       |
|---|--------------------|---------------------|-------------|------|-------|-------|-----|--------|--|-------|-------|-------|
| ( |                    |                     | ᅾ / 목 )<br> | 당 🧵  | 초     | 수 정   |     | 이 월 액  | ·· · · · · · · · · · · · · · · · · · · |       | 127   | 이 월 액 |
| 공 | <del>片</del> 저     | 사                   | 업           | 6,90 | )6    | 6,943 | 3   | 0      | (                                      | 5,943 | 6,890 | 0     |
|   | 손 해<br>긴급 <i>조</i> | 방 지<br><u>-</u> 치비용 | 및<br>지 원    | 2    | 25    | 0     | )   | 0      |  | 0     | 0     | 0     |
|   | 보                  | 전                   | 금           |      | 9     | 0     | )   | 0      |  | 0     | 0     | 0     |
|   | 운                  | 영                   | 비           | 1    | 6     | 0     | )   | 0      |  | 0     | 0     | 0     |

○ 「지방기금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심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2년 12월,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로 교육활동참여자 공제급여 1억 9,100만원을 이전시켜 동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처리하고 지출에 연동시킨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비추어 부적절한 조치로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9〉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지 출 계 회 액 전년도 지출계획 핹 구 지 출 액 여 분 도 이월액 혀 앤 액 잒 초 수 정 이웤액 (F=C-(A) (B) (D) (C=A+B)(E) D-E) 계 14,862 15,662 15,662 15,827  $\triangle 165$ 소 계 7,598 7,598 7,598 7,292 306 계 6,906 6,943 6,943 6,890 53 소 제 급 6,602 6,602 6,602 6,598 4 (사고보상비) 전 문 가 위 탁 32 35 35 31 4 공 제 보상심사위원회 21 21 21 6 15 사업비 교 업 224 194 송 164 224 30 소 전 망 손 해 방 지 25 축 긴급조치비용지원 중앙회분담금 0 60 60 60 60 예 방 사 업 비 416 378 378 200 178 안 전 사 교 卫 25 25 25 17 8 피 해 자 상 담 지 원 학 교 폭 력 피 해 지 원 249 249 65 249 184 교직원온라인상담청구 소 계 1,250 230 1,250 1,250 1,020 급 여 917 917 917 777 140 인건비 235 235 235 160 75 수 당 인적 자워 4대보험 97 97 97 81 16 운용 소 계 310 310 310 203 107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23 23 9 23 14 286 운영비 286 286 193 93 예비비 차기이월금 5,702 6,502 6,502 7,311 △809 밓기타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토론요지: 「생략」

Ⅵ. 심사결과 : 승인(2023. 6. 27.)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924** 

제출연월일: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 기 그 며                   | 전년도말<br><i>조</i> 성액 | Ę                  | 강해연도 증감의      | Ą             | 당해연도말<br><i>조</i> 성액 |  |
|-------------------------|---------------------|--------------------|---------------|---------------|----------------------|--|
| 기 금 명                   | (가)                 | 소 계<br>(나)=(다)-(라) | 조성액<br>(다)    | 사용액<br>(라)    | (마)=(가)+(나)          |  |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br>및 사고예방기금 | 8,471,786,384       | △1,160,238,693     | 7,355,669,084 | 8,515,907,777 | 7,311,547,691        |  |

### 3. 참고사항

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